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백승아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승아의원)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
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
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

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조사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규정을 통해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11조의2제4항에서 ‘관계 직원’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담조사관은 교육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면서 교육감(장)에 의해 위촉된 자이므로 관계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관계 직원’이 장학사 등 교육청 소속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므로, 법안의 취지를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